(가칭) 충신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통합 추진 합의서

충신동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권익 보호, 행정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, 양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통합 원칙과 세부사항에 합의한다.

제 1 조 (통합 추진위원회 구성)

- 1. 통합 추진위원회(이하 '통합추진위')는 충신동 소유자 누구에게나 위원 자격을 개방하며, 특정 단체나 인물 중심으로 구성하지 않는다.
- 2. 통합추진위의 대표는 기존 추진위 대표인 '이유준 추진위원장'으로 하며, 양 추진위가이를 공동으로 추인한다.

제 2 조 (관리규약 제정 및 공증)

- 1. 과거 통합 실패의 원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, 명확한 의사결정 체계와 책임구조를 포함한 관리규약을 문서화하여 제정한다.
- 2. 관리규약은 초안 합의 후 양 추진위의 공동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쳐 공증 후 확정한다. (공증 후에는 변경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)
- 3. 규약은 행정기관과 주민 누구에게도 공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, 객관성과 영속성을 보장한다.

제 3 조 (통합 사무실 및 업무 공유)

- 1. 통합추진위의 사무실은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기존 추진위 사무실(서울 종로구 율곡로 245, 1 층)을 사용한다.
- 2. 사무 운영은 공동 담당을 원칙으로 하며, 통합추진위 명의의 이메일, 회의록, 문서관리 체계를 공동 구축한다.

제 4 조 (단일 구역계(안) 확정 및 신청)

- 1. 양 추진위는 통합 이후, 구역계(안)를 비교·조정하고, 주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단일 구역계(안)를 총회에서 확정한다.
- 2. 구역계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(50 명 이상) 취합 및 행정절차는 통합추진위가 일괄 진행한다.

제 5 조 (총회 의결사항 존중 및 방해행위 제재)

- 1. 향후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통합추진위 전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, 불이행 시제재할 수 있도록 규약에 명시한다.
- 2. 총회 결의를 방해하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.

제 6 조 (합의 선언)

양 추진위는 본 합의서에 명시된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며, 신속하고 투명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.

🔙 작성일자: 2025 년 월 일

🝊 서명:

- 기존 추진위 대표:
- 비대위 추진위 대표: _____
- 입회자 또는 제 3 자 증인: _____